

대만 출입국 및 이민법 제36조:

- ② 전 항의 수용은 15일 이내로 한정하며, 필요시에는 매번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1호의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자를 송환할 방법이 없을 때는 주관기관이 그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기타 조건을 부가한 후에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2조 제5항:

입국경비관은 제 3 항 본문의 경우 강제퇴거를 받은 자를 즉시 일본 국외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 가능할 때까지 그 자를 입국자 수용소, 수용장 기타 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임심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4. 긴급보호의 경우 영장주의 적용의 문제

보호명령 특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긴급보호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적용 여부가 아니라 현행법의 논리를 가지고 긴급보호가 “현행법의 체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사법관련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위헌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고 한다.¹⁹⁾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히 불법체류의 경우가 현행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입국사법의 경우를 현행법으로 파악하는 의견은 이를 일종의 “계속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나, 불법체류 등의 경우 계속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계속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법으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한다. 계속법은 그 개념 규정상 “범죄의 성립(기수)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계속을 요구”하는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불법체류 등의 경우에는 미수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상 체류

19) 위 장지표 356쪽

기간 초과의 경우 기간 만료 즉시 또는 체류자격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바로 불법체류의 요건(제23조, 제24조)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계속법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례의 경우도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범죄의 경우 기수시기 또는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계속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규의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에 시간적인 계속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 및 무단폐기물배출행위 등의 경우 계속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이론적인 사항을 떠나 실천적으로도 불법체류자 등을 현행법에 해당한다고 파악하는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인의 경우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물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동료 등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 및 인종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한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제8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 임금체불, 폭행, 범죄행위 등 인권 침해적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강제퇴거될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노동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위 규정이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보의무 규정은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 원리 보다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위와 같은 실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 행위, 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해결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유를 알게 된 경우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 9. 23.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외국인 여성의 경우 특례 규정으로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성매매 피해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정 정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시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 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위 법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라고 인정되면 공소권이 없고 또한 정의 규정(위 법 제2조)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자를 강요 등의 행위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통지할 것을 규정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제약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62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항의 외국인을 인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점

위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 국내의 출입국관리법 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개선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법 규정상의 문제 이외에도 단속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강제적으로 차량에 탑승케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신분 미확인을 이유로 곧 바로 보호조치하는 등의 위법적인 운영의 실무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임검(臨檢), 압수, 수색의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문제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및 일본 입관법 제31조 참조

2) 임검(臨檢), 압수, 수색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시각을 제한하는 문제

야간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8조 및 일본 입관법 제35조 참조

3) 이의신청제도의 개선(제60조 등)

현행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에는 심사결정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본인”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²⁰⁾

4) 불법체류 범죄금제도 폐지 문제(제102조 및 관련 법적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NAP 외국인영역 참조

5) 보호시설에서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구금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및 제한하는 문제²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6) 출입국관리법상 제3차례의 보호통지 요청, 이의신청, 보호 일시해제 청구 등 절차상의 권리 사항을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하는 문제

서울고등법원 1995.12.8. 94구16009,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판결 참조

“이의신청기간은 원고가 위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이 개시된다 할 것인데, 서울외국인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피고의 위 강제퇴거명령서를 수령한 증인 000은 자신이 위 강제퇴거명령서를 원고에게 주지 아니함은 물론 이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이의신청 제도의 존재나 그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강제퇴거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한하는 문제(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주민투표법 제5조 제2항 및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한 일본 입관법 제24조 제4호 관련 규정 참조 :

일본 입관법의 경우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등 예외적 열거의 형식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사유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8) 외국인을 고용한 자들의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조화롭게 개정하는 문제(제19조 등)

9) 출생에 의한 체류자격 미부여 및 강제퇴거사유로 한 규정의 개정 문제²²⁾

20) 위 박상준 522 내지 527쪽 참조

21) 위 박상준 519 내지 522쪽 참조

22) 위 박상준 569 내지 571쪽 참조

(제46조 제7호)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제²³⁾(제46조 제11호)

<워크숍 발표문>

한국의 산업연수생 문제에 대하여

조현철 / 변호사

1.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요

가. 산업연수제도에는 해외투자기업에서 연수하려는 외국인을 국내기업에 연수시키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와 그렇지 않은 일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있다²⁴⁾.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활동범위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연수" 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이는 "취업"활동과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나. 산업연수생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1) 산업연수생은 순수한 연수를 위한 체류자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취업활동을 위해 도입되어 탈법적인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2)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불법 체류하면서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불리하여 산업연수생으로 하여금 연수업체를 이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체류자임을 악용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속출하여 국제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3) 산업연수생의 모집, 배정,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송출국가의 송출기관과 연계하여 별다른 통제 없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독점함으로써 연수업체가 스스로 적격자라고 판단하는 산업연수생을 선발하기 어렵고 산업연수생의 송출과 관련한 비리나 임금의 중간착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4) 산업연수생을 배정 받은 연수업체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는 것이 되고 이는 외

23) 위 박상순 573 내지 575쪽 참조

24)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에도 일반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반산업연수생제도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인력의 수급이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조절기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셈이 되어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는 2003. 8. 16.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4. 8. 17.부터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것이어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법률상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영실제

가. 도입규모 및 업종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및 업종은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내 경제사정 및 인력수급 상황과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나. 송출국가, 송출기관의 선정

송출국가는 대한민국이 산업연수생을 도입 받는 대상이 되는 국가를 말하는데,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송출국가의 선정 및 국가별 정원배정이 이루어진다. 송출기관은 송출국가에서 연수희망자를 모집, 선발하여 일정한 교육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국내에 파견하는 업무를 맡는데, 중소기업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송출기관별 정원을 배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 모집 및 선발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선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연수협력계약을 체결한 송출기관이 일정 배수를 모집하여 위 중앙회에 추천하면 위 중앙회가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송출기관은 선발된 산업연수생과 사이에 연수생파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 연수업체의 선정, 연수생의 배정 및 연수추천계약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연수업체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중앙회는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연수업체를 결정한다. 이때 위 중앙회는 그 연수업체에 배정된 인원을 통보하고 위 중앙회와 연수업체 사이에 연수추천계약을 체결하고, 연수업체는 위 연수추천 계약 체결시 소요 경비 명목으로 위 중앙회에 연수생 1인당 소정의 연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근로조건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전액, 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기간, 휴게 및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연수, 4) 최저임금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 등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²⁵⁾.

연수장소는 산업연수생 각자에게 특정 연수업체가 지정되므로 연수기간 내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연수기간 중 연수업체의 연수생 활용 취소, 부도, 휴업·폐업, 조업단축 등으로 연수업체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연수업체가 지정되게 된다.

바. 입국 후 관리

입국 후 산업연수생의 관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민간전문업체인 위탁 관리회사에 위탁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산업연수생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연수업체에서 매월 정기급여 일에 이를 공제하여 소속 위탁관리회사에 송금하고 있다.

3.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가. 법치주의의 원리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출입국관리법령상 산업연수생이 연수활동이 아니라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체류자격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사실상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법상 지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있는 경우로서 우리 헌법 제6조상의 법치주의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25) 노동부 예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 제8조 참고.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중소기업청의 지정을 받아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의 협력 아래 산업연수생을 모집하고 연수업체에 배정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연수관리비를 지급 받는 것은, 곧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료직업소개행위,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 등의 요건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등 소관 행정기관이 위 중앙회 등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소개, 공급 또는 파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작용으로서 헌법 제95조의 법치주의의 원리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나. 평등권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산업연수생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들의 보호를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은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근로기준법제6조), 2)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전액, 통화불 지급(제42조) 및 금품청산(제36조), 3) 연수기간(제23조), 휴게 및 휴일(제53조, 제54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연수(제55조) 등 지극히 일부 규정만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위 예규 제8조 참고).

따라서 적어도 위 노동부 예규상으로는, 그 밖의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예를 들어 퇴직금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해고의 제한, 휴가제도,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보호 등의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 예규의 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보호에 있어서, 산업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생이 아닌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현재 운용중인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하면 산업연수생은 엄연히 외국인 근로자로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장소에 관하여 본래의 의미의 연수를 위한 산업연수생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연수기간 동안 직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지금처럼 거의 전면적으로 봉쇄시키고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직장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과 아울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본질적으

로 침해하는 것이다.

라. 시장경제원리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사실상 근로자로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과 동일한 액수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고, 이러한 임금수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연수생에게 직장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고 있어 달리 결정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단순기능의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정이 위와 같이 항상 최저수준의 임금만을 지급 받아야만 할 경제질서의 정당한 목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4. 결 론

결국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헌법상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면적인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교육훈련

- 귀환 프로그램
- 권리주창

귀환 프로그램

1. 이주노동자 저축과 대안적 투자 (Migrant Savings and Alternative Investment, MSAI) - 지속적인 사회개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지닌 이주 노동자 / 발표: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Asian Migrant Centre, AMC)

(설명) 1993년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 이후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을 마치고 본국에 귀환한 후에는 고국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주노동을 하기 위해 출국할 것인지에 대하여 갈등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귀환은 선택사항 중 하나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이다.

2. 이주노동의 단계

- 본국에서의 구직 및 사전출발 → 고용국에서의 현지적응 → 본국 귀환 및 재통 합

3. 이주노동의 주요 요인(이주노동자 입장)

- 본국의 빈곤, 실업 및 구직기회 부족
- 가정폭력 및 가족부양 역할의 증대 -> 이주여성노동자 증가
- 주요 송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등

4. 이주노동의 주요 요인(고용국 입장)

- 노동집약에서 고도의 기술 및 서비스중심으로의 경제 재개편과 세계화
- 위축된 노동시장
- 간호사, 건설기술자 등 특정분야의 노동자 부족
- 자국내 노동자들의 3D 업종 기피
- 자국내 여성의 경제참여 증대에 따른 가사도우미 서비스 필요

(설명) 이주노동의 원인은 세계경제구조 속에서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고용국)와 국내 경제사회적 어려움(송출국) 때문이다.

5. 이주노동의 현실

- 노동권리와 계약 위반, 불법고용, 질병, 성적학대, 산업재해, 심신학대, 차별, 외로움, 가족해체 등

6. 노동교환의 착취적 논리

- 값싼 노동력의 대규모 송출 및 고용 → 대략 2,000만 명의 아시아계 이주노동자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이 절반 비율 차지
- 자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 혜택 그리고 인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주노동자 유입 불가
-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궁핍과 약점을 이용
- 이주노동자의 인권 악용 및 침해는 당연한 결과
-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중억압 (인종, 계급, 성)

7. 재통합 계획과 준비

- 고용국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귀환은 필연적으로 발생
- 고용국에서의 직업 불안정성, 해고, 고령화, 질병, 강제추방, 가족관계 단절, 외로움 등
- 귀환에 대한 계획과 재통합에 대한 준비 필요
- 재통합의 정의: 이주노동자가 그의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
- 효과적 재통합 과정 구축을 위한 개인, 경제, 사회의 다각적 노력 필요
- 대안적 수입 및 경제적 자원 마련은 필수
- 귀환 전 저축과 대안적 투자 및 기업 설립에 대한 계획 필요

설명) 고용국에서 근로 및 생활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주노동자는 결국 이방인이다. 또한 이주노동을 마치고 귀환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사회 부적응 문제와 같은 또 다른 이방인으로 남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귀환을 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며, 저축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8. 투자와 사업가정신

- 귀환 이주노동자를 위한 4가지 소득/경제적 생존 전략들: 지역고용, 자영업, 지역고용과 자영업의 결합, 주기적 이주

- 임금 소득 또는 지역고용은 대개 실질적이지 못함
- 주기적 이주는 이주노동자와 그(그녀)의 가족들에게 사회적 비용 및 부정적 영향의 심화를 가져옴. 결국 다시금 귀환 및 재통합해야 함.
- 귀환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자와 사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투자의 다양한 형태/선택: 재정적 수단, 자산, 사업 등
- 사업가정신은 가장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선택,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은 송출국의 생산성을 증대

9. 대안적 투자와 사업

- 자국 정부로부터의 “영웅”으로서 착취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 재정적자, 해외부채, 통화안정 등 국가 경제의 적자를 메우는 엄청난 연간 송금
- 진정한 영웅주의: 이주노동자들은 사회개발 파트너, 국가 건설자 → 그들의 경제적 잠재력으로 경제와 사회를 변혁하고, 역누르는 문제들을 경감시켜 그들은 물론 후세대들이 다시 이주를 할 필요가 없게 됨
- 핵심전략: 사회적 투자 및 사업을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저축 및 송금의 지원 및 장려, 국가 경제력/생산력 증진의 초석으로서 무한정, 비투기성, 무이자로 이주노동자 재원의 극대화 → 해외부채 및 해외투자의 의존도 감소
- 대안적 투자와 사업: 이주노동자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득, 경제적으로 수익적이며 실질적임, 또한 인권, 사회정의, 성적 평등, 생태학적 지속성을 촉진

설명)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일종의 ‘영웅’으로 국가가 이미지를 형성하여 착취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배려하려는 관점에서 진정한 영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한다면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있어 이주노동자를 정부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저축과 투자는 단순히 저축, 투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이주노동자들의 귀환 그 자체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인식해야 한다.

10. 계획된 재통합

- 이주노동자의 재통합과 사업가정신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며, 유용 → 효과적인 재통합의 필수적인 요소는 귀환 후 새로운 소득/경제적 재원을 가지게 됨

- 계획된 재통합: 이주노동자가 적당한 시기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주노동 이후에 그들의 가족과 다시 결합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됨
- 정신사회학적, 경제적 준비 연계: 이주노동을 하는 동안 이익과 기회의 조직화와 최적화를 통한 준비 완료, 이주노동의 실패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최소화, 이주노동자와 그들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경제적 재원의 형성, 이주노동 끝의 결과와 변화에 대한 이주노동자 및 그들 가족들의 인식 증대 [2000년 필리핀, 제1차 재통합/MSAI 국내 컨퍼런스]
- 경제적 재통합: 이주노동자의 필연적인 귀환 준비의 일환으로서 대안적 투자 및 기업 건립을 위한 이주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재원을 이용하고, 결집하는 과정

11. 사회의 원동력 및 개발 파트너로서의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 : 헌신적인 희생자, 국가 구명보트 또는 국가 건설자?
- 송출국 및 고용국에서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
- 이주노동자의 다중경제 정체성: 임금 노동자, 소비자, 가족부양자, 사회투자자
- 송출국 및 고용국 사회에서의 다중 역할: 여성, 노동자, 사회개발 파트너
- 이주노동으로 인한 여성이주노동자의 사회, 가족, 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 : 가족부양자, 의사결정자?

설명) 이주노동자들의 귀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단지 경제적 부분 외에도 그들의 가족, 공동체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귀환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저축과 사업투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12.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잠재력

- 이주노동자의 연간 송금은 송출국의 국가적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설명)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은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은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생겨난 일자리는 저임금을 기저에 깔고 있으며, 이는 이주노동의 한 요인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송금과 저축으로 생겨난 일자리는 이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13. 사회적,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이주노동자

- 전 아시아에 걸쳐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폭력에 반대, 보다 나은 작업환경 및 생활조건을 요구, 정책과 법적 보호를 주장, 전 세계적 인권 중대, 이주노동자의 문제들을 국가적, 세계적인 포럼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설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설명해 주고 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인식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

14. 국가 건설자로서의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능력 활용 및 최적화 (이주노동자 내적 통제)
- 잠재성 활용 (외적 통제)
- 이주노동자의 약점 극복 및 변화 (이주노동자 내적 통제)
- 위험의 인지 및 무력화 (외적 통제)
- 사회적, 성적, 계급적 역할의 주장
- 목표/비전: 사회적, 성적, 계급적 역할의 주장으로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창조를 촉진하고, 대안적 투자 및 사업 시행
- 핵심전략: 대안적 투자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저축 조성 + 자국내의 기업 설립

15. 이주노동자의 잠재력과 한계 (SWOT)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된 소득과 보다 나은 경제적 재원 ▶ 새롭고 더 나은, 생산적인 아이디어와 실천, 경험, 기술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과 투자 무능력 ▶ 사업 기술 및 경험 부족 ▶ 건강문제 및 장애, 사고 ▶ 가족의 해체 ▶ 부양무능력 가족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청난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가지는 경제적 잠재력 ▶ 이주노동자가 기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다른 단체 및 정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국과 고용국에서의 제한적, 편의주의적, 차별적인 정책 ▶ 자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부족 및 무지 ▶ 경제적 불경기 및 위기 ▶ 장기 이주노동의 사회적 비용 및 부정적 효과 ▶ 해고, 일자리부족, 강제출국 ▶ 자국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16. MSAI 프로그램

- MSAI = "Migrant Savings & Alternative Investment" (이주노동자 저축과 대안적 투자)
- 필리핀 사례: "지역사회 개발 및 재통합을 위한 MSAI"
- MSAI 중요 특징 :
 - ① 미시적, 중도적, 거시적 수준에서의 혜택 -> 미시적 수준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 권한, 가족화합을, 중도 및 거시적 수준은 지역사회, 사회변혁, 국가건설을 의미
 - ② 재통합 준비의 일환
 - ③ 이주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핵심 참여
 - ④ 6자간 기능적 파트너쉽과 협력
- 기본 원칙 :
 - ① 경제적 수익성과 실행 가능성, 인권, 사회정의, 성적 평등, 생태학적 지속성의 촉진
 - ② 보다 성적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지향하는 이주노동자와 여성으로서의 역할 변화
 - ③ 사회개발과 국가건설에 기여

17. MSAI 프로그램 진행도

- 발표 슬라이드 참고 (영문 자료)

18. MSAI 프로그램 요지

- MSAI 프로그램은 1995년 AMC(Asia Migrant Center), MFA(Migrant Forum in Asia), Unlad 공동으로 시작. 지속적인 개발, 보급 및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저축을 하고 사업을 하려는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도움 -> 이주노동자의 해외거주와 재원, 사회적 역할 및 참여의 극대화 채널 및 과정의 확립을 목표로 함
- 이주노동자와 파트너 수의 한계성 존재 → MSAI는 본보기 과정/프로그램 의미
-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주노동자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MSAI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님. -> 계획되고 준비된 재통합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귀환하여 재통합할 수 있도록 장려

19. MSAI 주체

- 핵심주체: 이주노동자(여성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가족과 지역사회, 송출국과 고용국의 NGO와 정부기관, 민간부문(대학과 기업), 정부간국제기구(IGO), 국제기구
- 기능적 요소: 6개 영역의 파트너쉽 (20번 발표 슬라이드 참조)
- 시범적 MSAI 모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설명) NGO와 이주노동자들의 공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에 대한 신뢰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고용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액이 충분히 조성되면 송출국(본국)에 투자를 한다. 이때 송출국(본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NGO 그리고 정부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 외에 그들의 가족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저축을 공동으로 하고, 투자도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기 투자액의 회수를 시도하는 등 돈의 사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 이때 이주노동자의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가족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할은 저축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조율자라는 것이다. 물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은 항상 매우 어려울 것이다.

20. 6자간 파트너쉽

- 아시아 지역별 NGO 파트너
- 고용국 내 NGO 파트너
- 고용국 내 이주노동자 재통합 및 저축그룹
- 송출국 내 NGO 파트너
- 송출국 내 기업
- 송출국과 고용국의 정부, UN, 중개자

21. MSAI 프로그램 내에서의 주요 역할

- 송출국: 개인, 단체, 노동조합에 의한 자본 조성, 이주노동자 조직 및 저축 조성
- 정부, 정부간국제기구, 민간부문: 중개자로서 장려 및 지원
- 고용국: 대안적 투자 형성, 투자 환경 조성, 사업시행(이전 이주노동자,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등)

22. 핵심역할, 과업 및 주체 (Core Task 1)

- 사람과 자원 조직, 교육/능력 배양, 이주노동자, 여성, 지역사회 그리고 NGO 파트너 의식화

23. 핵심역할, 과업 및 주체 (Core Task 2)

- 네트워크 형성, 정책지원, 연대/파트너쉽 계발

24. 핵심역할, 과업 및 주체 (Core Task 3)

- 시범실시 및 모델링

25. 이주노동자 저축 조성 원칙

- 이주노동자의 저축 잠재력과 실질적인 능력
- 저축 철학: 투자를 위한 저축 vs. 소비를 위한 저축
- 저축 전략: 소득-저축=경비
- 가족의 노력
- 재원 그룹: 이주노동자 그룹 저축

설명)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자본이 국내에 집적되어 투자되는 것이다. 반면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은 본국에 유입시 분산되어 가족들에 의해 소비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이 일부라도 저축되어 집적자본의 형태로 투자될 수 있다면 이는 국가 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강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 극히 저조하다.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이 생기면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입액이 지출하는 부분보다 적으면 저축된 돈을 지출에 사용한다. 그리고 돈을 모두 쓰면 다시 이주노동을 하게 된다. 만약 본국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 이주노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겠지만 먼저 이주노동자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은 투자, 국내수요 증가, 공동체 수입증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 필리핀의 코코아섬유공장을 예로 들면, 코코아 열매를 활용하여 천연섬유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가루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의 수분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 이 공장이 코코아 농장과 코코아 열매 껍질을 사는 거래를 함으로써 큰 규모의 거래는 아니지만 농장의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 등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공장의 생산물을 해외로도 수출하여 무역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6. 대안적 투자 원칙

- 대안적 투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 및 선택 → 대안적 투자 형태로서의 사업
- 투자장소 : 송출국 vs. 고용국, 투자를 통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본국 내 지역
- 재통합의 준비과정으로서의 대안적 투자 → 이전 이주노동자들의 대안적 소득 원천
- 주안점 : 자본과 투자의 소유권(여성의 소유권), 경제, 사회, 성적, 환경적 기본 틀, 성, 경제, 가족 등의 역할과 관계(여성이 가족부양자 혹은 의사결정자?), 소득의 원천, 국가적 경제 재원 및 토대, 실천, 민족적 배경, 접근(성평등), 대안적 인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조성

설명) 이주노동자들이 저축을 하고 이를 본국에 투자하게 되면 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의 관행, 현재의 경제사회구조, 현재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27. 사업의 성과 지표

- 경제지표 : 수익성, 지속성,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수혜
- 인권 및 사회정의 지표 : 지역사회 부가가치, 사회발전,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가치 및 의식화
- 성평등 지표 : 여성 이주노동자의 참여와 역할, 재원의 소유권, 배분 및 사용, 의사결정, 평등을 지향하는 성적 관계의 변화
- 생태지표 : 지속성, 환경 부가가치
- 건강함

설명)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인권, 사회정의, 성평등, 생태적 관점 등 다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28. 이주노동자 사업 장애요인

- 사업적 요인 : 사업 기술과 경험 부족,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 사업을 위한 기술적, 업무적 지원 전무
- 개인과 가족적 요인 : 가족의 다른 우선적 욕구 존재, 사업에 대한 욕구 부재, 저축동기 차이
- 정책과 환경적 요인(송출국) :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적시적소의 지원 부재,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국가적, 지역적 지원, 기회주의적 정부기관 및 정치가
- 정책과 환경적 요인(고용국) : 비안정적 고용, 기회주의적인 정부기관 및 정치

가, 이주노동자의 건강 및 나이

29. 이주노동자 사업가정신 : 동인과 제한 요소

현실	이상
▶ 이주노동자는 사업가가 아니다.	▶ 이주노동자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동인	제한
▶ 저축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높은 인식도 ▶ 이주노동자와 여성의 가족지원과 재원의 현명한 사용	▶ 사업 구상 및 시행을 위한 인프라, 지원, 과정 부족 ▶ 사업기술 부족 및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

30. MSAI-CDR 프로그램 연혁

- 1995 : 홍콩 이주노동자 저축 그룹 처음으로 시작
- 1996 : 필리핀 Unlad Kabayan 중심으로 사업 시작
- 1997 : 일본 Solidarity Centre
- 1998 : 제1차 아시아회의(필리핀), 한국에서는 외노협의 갈릴래아가 파트너단체로 활동 시작
- 2000 : 제2차 아시아회의(대만), 대만 Hope Workers Centre, 제1차 필리핀 사업가 전국 컨퍼런스
- 2001 : 인도네시아 Jarnas Pekabumi, 태국 SDSD & CMC
- 2002 : 3개 시범국가 선정(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 2003 : 제1차 국제 컨퍼런스(이주노동자 저축, 송금과 경제적 잠재력) → 보홀(Bohol) 선언, 제1차 국제 컨퍼런스 → 자카르타(Jakarta) 선언
- 2004.10 : 제3차 아시아회의(필리핀) 예정

31. 1995년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

- 송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도입
- 고용국 : 홍콩, 대만, 일본 도입, 한국은 도입은 하였으나 중단됨. 유럽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도입을 원하고 있음.
- 14개의 재통합 및 저축 그룹(홍콩, 일본, 대만 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 163명의 저축 이주노동자(90% 이상이 여성이주노동자)
- 저축액은 US\$ 108,000 정도

32. MSAI 프로그램 도입 국가

- 발표 슬라이드 참고

33. 필리핀 이주노동자 저축 그룹과 NGO 파트너(홍콩, 대만, 일본 내)

- 발표 슬라이드 참고

34. 태국 이주노동자 저축 그룹과 NGO 파트너(홍콩, 태국, 대만 내)

- 발표 슬라이드 참고

35.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축 그룹과 NGO 파트너(홍콩, 한국, 태국, 대만 내)

- 발표 슬라이드 참고

36. 1995년~2002년 총 저축액과 저축인원

- 발표 슬라이드 참고

37. 1995년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3&4)

- 필리핀 : 9그룹이 사업에 관여, 131개의 사업체 존속, 99명의 사업가 교육 및 원조(이전 이주노동자 혹은 지역사회 여성 대다수), 318개의 일자리 창출 및 결속, 소규모의 이익 창출, 인사노무시스템 제도화
- 인도네시아, 태국 : NGO 파트너 연계, 시범지역 조사 및 확인

38~39. 중요한 성과

- 3개국 MSAI/재통합 모델의 성공 사례
- 이주노동자 저축 조성 : 대다수가 여성
- 이주노동자 저축의 사회 투자
- 지역 생산품의 창출 및 판촉 → 지역자원 활용 및 부가적 경제적 혜택
- 지역 사업가의 배출 및 활성화 : 여성 사업가
- 일자리 창출
- 보다 나은 사업 구축
- 소득 증대와 발생 : 이주노동자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 정부
- 과소비가 아니 사업가 정신으로의 의식 및 행동 변화
- 건강에 좋은 식품 생산 : 유기농 닦고기
- 지역의 경제적 거래 및 활동 증가 :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참여 증가
- 지역별 네트워크 : 정기적 지역회의 개최

- NGO, 정부기관, UN, 세계기구, 개인 중개자 등과의 파트너쉽

설명)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의 유입국은 과거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을 하고 귀국할 때 단순히 돈만 벌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경제적 구조 및 요인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 지역회의

- 아시아에 MSAI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사업가, NGO 파트너들이 모여서 경험, 전략, 연대 계획 등을 논의

41. 1996년~2000년 사업 예(필리핀)

- 고구마 농장, 유기농 닭 농장, 정미소, 소매점

42. 2001년~2003년 사업 예(필리핀)

- 고구마 가공, 유기농 닭 농장

43~46. 홍콩의 필리핀 이주노동자 저축 그룹 - FFRSG(Forum of Filipino Reintegration and Savings Groups)

- 홍콩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MSAI 교육 및 참여 독려
- 2003년 이주노동자의 날에 필리핀 내 가사노동자들의 이슈를 공론화

47. 제3차 아시아회의

- 2004년 10월 11~14일, 필리핀 마닐라
- 주제(안) : "MSAI, 자산증식 그리고 지역경제: 이주노동자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개념과 전략"

<질문과 답변>

질문1 :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AMC에서 이주노동자 저축그룹에 많은 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또한 성공적인 귀환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송출국과 고용국 내의 많은 NGO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가?

답변1 _NGO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송출국(본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소비자였으나 이제는 창업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과 사업에 관계할수록 사업마인드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 사업에는 연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통하여 이를 조달해야 한다. 송출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NGO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조정하는 역할 외에 감시, 모니터링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공동체의 신뢰구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국은 경제발전을 이루한 나라이므로 고용국의 NGO는 경제발전의 노하우 및 창업관련 정보를 이주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물론 실제로 이를 공동체 수준에서 이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귀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NGO간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고용국에서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송출국에서의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송출국에서 사업체가 운영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저축을 하고, 여기에 돈을 송금하게 되지만 긴급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다. 따라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얹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사소통의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데 실무 담당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MFA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질문2 :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정치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정치적 역할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답변2 _국내적 수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정치인, 정부 등에게 주지시켜 노동복지 관련기관의 원조를 획득하는 것이고,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제경제 관련 기구 등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을 위한 기금 등이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관련하여 원조를 받을 때 고용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송금액의 용도에 대하여 간섭을 하도록 하면 안된다. 어디까지나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송금액은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 등은 단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질문3 : 지역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부패하고 경제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정부 하에서는 귀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답변3 _지금 설명하고 있는 귀환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각 국가에 적용시킬 때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문4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귀환프로그램을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이주노동자 소그룹을 조직하여 저축을 하도록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답변4 _귀환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MFA 인턴쉽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많은 수의 인턴쉽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일 것이다.

설명1 : 유럽쪽에서 귀환프로그램에 대하여 2년 동안 1억 5천만유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MFA 혹은 각 회원단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기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리주창

권리주창(Advocacy)이란 무엇인가?

1. 권리주창이란 단순하게는 어떠한 세력(cause)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한 이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권리주창은 발언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며 의사 결정자들을 문제의 해결로 이끄는 것이다.

권리주창의 목적

1. 권리주창은 정책이나 프로그램, 혹은 법안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의뢰인이나 서비스의 대상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권리주창은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데 목적을 둔다.

권리주창 이행의 차원

- 지역사회적 차원
- 국가(송출국) 차원
- 유입국 혹은 양국가적 차원
- 지역적 차원(예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국제적 차원(예 –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에관한세계위원회GCIM)

- 이주노동은 단순히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다.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의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를 보면 아시아 각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각자의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MFA 차원에서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ASEM에 참가하여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ILO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MFA가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을 접촉하여 그들이 이주노동 관련 의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다. 정부대표가 NGO의 목소리를 그들의 의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지만 접촉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접촉한 후에는 의견을 총회에서 제시하여 의제로 채택되도록 설득해야 하지만, 정부대표는 보통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시아의 문화 특성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

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한다.

권리주창의 이해관계자

- 수혜자
- 결정권자
- 동맹자와 협력자
- 반대세력

권리주창 활동의 주요 영역

- 리더쉽 개발
- 연합체 형성
- 연대
- 정치적 로비
- (법제정에 있어서) 변화 추구
- 미디어 활용
- 반대세력에 대한 대응

권리주창의 기술 및 전략

- 이슈화
- 동원
- 대화
- 협상
- 로비
- 청원
- 압력행사
- 정보제공

권리주창의 과정설계 및 원칙

- 과정설계 및 원칙에 대한 원고 소개
- 1. 서문 및 교육 방법론
- 2.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분석
- 3.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 핵심가치, 개념 및 이들의 적용
- 4.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운동의 기본논의구조 설계

5. 이주노동자 인권의 국제적 논의구조와 기준 확립

6. 국제노동기구

7. 운동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 논의

- 유엔의 회의 및 논의과정에 대하여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 (예 : 본회의장의 허용된 발언시간 내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등). 또한 회원단체들이 WTO, GATT와 관련해서 각 나라의 상황, 법제화 등에 대하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 법률관련 교육과 공동체 조직 교육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법률 관련하여 MFA는 많은 변호사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MFA 자체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 노동자로서 분류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법(Household Service Act)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입장 정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 회의장에서 로비를 위해서는 회의장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WTO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정책노선을 따르자면 회의장 밖의 반대집회에 가담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로비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회의장 밖의 집회 세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로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의 영역에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어렵다.

- 외노협의 경우에도 이상적으로는 불완전한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그동안의 운동의 성과이며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 개선된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둘러싸고 입장을 정립하는데 고충이 있다.

성명서 / 행동계획

- 서울 성명서 (최종전문)
- 행동계획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The 9th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10년 : 회고와 전진”

2004년 9월 13-14일

대한민국 서울, 감리교 여선교회관

서울성명서

아시아 20개 국 -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과 한국 - 에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 참가한 우리 160명 참가자들은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회원단체들과 풀뿌리 이주노동자 조직, 노조, 노동단체, 여성단체, 개발단체, 민간단체, 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 권리주창자들로서 오늘날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보 개념이 서로 상충하는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과 그 국내 파트너인 외국인이 주노동자대책협의회(JCMK)와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AMC)가 공동 주최하여 2004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높이고, 주창하며 옹호해온 역내 네트워크인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회의이기도 하다. 그동안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이주민협약>과 <ILO 97호 협약> 비준 캠페인 조직과 국제이주노동 담론의 중심에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한 관심 확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본국에서 이들의 송금을 활용한 귀환프로그램 시도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또한 대만 신주(제1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개최지)에서부터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이룬 승리와 성과를 자축하며, 특별히 외국

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투쟁으로 일군 다음의 성과를 기념하고자 한다.

1.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관련 법 제정
2. 산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 견인
3.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화

우리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고 일하며 투쟁하기”(1994년에 개최된 첫 번째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우리 의 다양한 요구, 당면과제, 심지어 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확대하며 협조를 심화하고자 모였다. 이에 따라 논의의 초점을 이주와 개발,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인간안보, 인신매매와 이주 노동, 이주의 여성화, 이주노동의 여성문제, 노동의 비공식화, 귀환과 송금, 이주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 등에 맞춰 논의한 우리 참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반테러법(테러방지법)”과 적법한 재판절차 없는 구금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령 폐지.
- 강제 HIV/AIDS와 임신테스트 정책 폐지.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한국, 일본의 연수제도 중단.
-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연예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 적용을 통한 보호와 일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
- 가족과 함께 할 권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건강보호와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여타 권리와 보호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옹호.
- 결사의 권리, 노조 조직 및 가입 권리, 이주노동자 참정권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력 송출국, 고용국간 쌍무 혹은 다자간 양해각서(MOUS) 체결.
-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인력 송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
- 성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대안투자를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이주노동자 본국 귀환시 귀환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주과정의 모든 단계별 훈련 실시.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협약>의 전 세계적 비준

과 효율적 실행, ILO 협약과 기타 국제법 채택.

-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즉각 중지.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아시아지역 협력체(SAARC) 등과 같은 아시아 역내 기구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지침과 협의 실행.

2004년 9월 15일

세부 권고사항

우리의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이의 인권과 존엄성 존중에 기초한 인간안보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위성

- 이주노동자 권리주장을 위해 이주노동자 이슈와 인권침해 사례수집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기관에 대응할만한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조직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론, 사법제도와 관료들의 태도, 관습, 관점 개혁과 민감성 제고.
- 세계평화 건설을 위한 전쟁반대운동 동참과 국제연대와 네트워크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의 적극 전개.
- 다원적 인권에 기초한 이주문제 이해 주창.

B. 이주에 대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응답의 강화

-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함께 공정하고 공평한 임금을 통한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부여.
- 교육을 통한 권리주장, 직업적 성별분업에 따른 고정관념 타파, 노조 조직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능력 강화.
- 보건산업 노동자 송출국에 대한 보다 높은 임금 요구와 고용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와 보상요구를 통한 “두뇌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로 송출국의 건강과 교육 향상촉구.
- 여성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정당한 임금과 수입을 통해 해외취업이 강제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동력 송출국 정부에 대한 로비.
- 결혼형태를 띤 인신매매를 포함,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캠

폐인 촉수.

- 이주노동자 가족 재회 보장을 요구하는 유엔이주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 국제결혼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별히 자녀들의 권리와 복지와 관련한 국내 정책과 법제화 촉구.

C. 노동의 비공식화(비정규화) 경향 반대 캠페인

- 각국의 사회운동 확대를 위한 전통적 노조 역할 재고.
- 노동착취 사례 수집과 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비공식 노동의 노동착취적, 탄압적 관계에 대한 정부간 고위급 차원 논의 촉구.
- 노동의 비공식화 경향에 대한 반대캠페인, 특별히 연수제도와 같이 이주노동의 비공식화를 촉발하는 제도에 대한 반대.
- 고용국 내 송출국가 대사관에 자국 비정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촉구.

D.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국가간 불평등 해소와 이를 위한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송금 활용

- (WTO-GATS 주창자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송금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와 교육캠페인 제공.
- WTO-GATS mode 4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회원 및 이주노동자 권리주창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캠페인 실시와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될 WTO회의에 대한 로비문건 작성; MFA회원들과 세계 부정의에 대항하는 현존의 네트워크와 운동과 연대.
- 이주와 귀환이슈와 관련하여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의식향상과 능력제고를 통한 이주노동자저축과 대안투자(MSAI) 프로그램 참여 유도.
- MSAI, 송금경로와 사용, 이익에 대한 조사연구 시행.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MSAI 캠페인 강화, MSAI 프로그램 지원과 출국전 교육에 MSAI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로비.
- 회원간 교환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송금저축프로그램에 대한 MFA 회원들간의 정보공유와 역량개발 시행.

E. 모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복지를 위한 거시적 인식제고

-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무 건강관리계획 수용,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과 질적 건강관리를 위한 송출국과 고용국간 양해각서 체결 로비와 ASEAN, APEC, SAARC과 같은 역내 기구 활용.
- 송출국과 고용국에서 이주노동자 출국전 교육, 현지 오리엔테이션과 귀환 및

귀환프로그램에 더 나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지교육 통합.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과 주창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 직업병, 모성보건, 주거 및 노동환경, 특정 취업분야의 유해환경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 건강관련 성별구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과 관행의 폐지.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채택, 2004년 9월 13일-16일, 대한민국 서울

NAMES OF ORGANIZATIONS:

- Action Network for Migrants (ACTFORM), Sri Lanka
Ain O Salish Kendra (ASK), Bangladesh
All Nepal Women Association (ANWA), Nepal
Anti-Slavery International, Thailand
Asian Migrant Centre (AMC), Hong Kong
CARAM Cambodia, Cambodia
Center for Migrant Advocacy (CMA), Philippines
Center for Indonesian Migrant Workers (CIMW), Indonesia
Coalition for Migrants' Rights (CMR), Hong Kong
Commission of Filipino Migrant Workers (CFMW), Amsterdam
Federation of Trade Unions Burma (FTUB), Burma
Federa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 Organization (FOBMI), Indonesia
Hong Kong Coali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KOTKIHO), Hong Kong
Hope Workers' Center, Taiwan
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IMWU), Hong Kong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n Ho Chi Minh, Vietnam
 Jarnas Pekabumi, Indonesia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JCMK), Korea
 Lao Women Union, Laos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Legal Aid (LHRLA), Pakistan
 Kanlungan Center Foundation, Inc., Philippines
 MAP Foundation / Action Network for Migrants, Thailand
 Migrant Care, Indonesia
 Migrant Forum in Asia (MFA), Philippines
 Migrant Forum India, India
 Migrant Services Center, Sri Lanka
 Migrant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China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RI), Geneva, Switzerland
 Society for Christian Reflection, Malaysia
 Solidaritas Perempuan, Indonesia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 (SMJ), Japan
 St. Francis of Assisi Workers Centre, Singapore
 Tenaganita, Malaysia
 Thai Action Committee for Democracy in Burma, MMN
 Unlad Kabayan Migrant Services Foundation, Inc., Philippines
 Welfare Association of Repatriated Bangladeshi Employees (WARBE),
 Bangladesh
 Women and Media Collective, Sri Lanka
 Women Rehabilitation Center (WOREC), Nepal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MFA)

2004 총회

2004년 9월 15-16, 대한민국 서울

“공동행동계획” : 2004년부터 향후

A. 공동행동 (아시아차원)

제안된 활동/결과	관련 단체
1. 세부 지역별 네트워킹	
서아시아 *이주노동자 조직화 논의, 유엔이주노동자 협약 비준캠페인 등	WARBE (lead) CEC, ASK, RMMRU, MFI, WOREC, ANWA, ACTFORM, MSC, WMC
메콩 *메콩이주민네트워크 강화 *조사와 자료집 발간 *권리주창	AMC와 메콩이주민네트워크 간 협력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 훈련, 능력개발 강화	SFWC (lead) Migrant Care, AMC, Kanlungan, CMA, IMWU, FTUB, CIMW, FOBMI
2. MFA 사무국 인턴쉽 체계	MFA 사무국
*MFA 사무국에 인턴 수용 *MFA 회원간 인턴쉽 배치 독려/진행	

특별 전문위원회	
1. 서아시아 *서아시아 의제와 활동 개발	CIMW (lead) WARBE, AMC, ACTFORM, CMA, SP
2. 이주의 여성화 *여성이주노동자 이슈와 이주의 여성화 문제 제기 지원그룹 형성	JCMK (lead) Karlungan, Migrant Care, SP, Carrie, ANWA, WOREC, WMC, ASK, HWC, Unlad, SMJ
3. 훈련, 모니터링과 권리주창 *이주노동자 이슈, 폭력에 대한 범아시아 차원의 모니터링 이주노동자 이슈, 폭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주노동자 권리주창을 위한 정보 활용 *이주노동자 인권 훈련 전문훈련프로그램 아시아 이주노동자인권 훈련프로그램 (캐나다인권재단, APWLD, 아태네오인권센터와 공동) *권리주창에 관한 훈련교안/교재개발	MFA 사무국 (lead) AMC, CMA, ANWA, MSC, WOREC, ASK, SP, HWC, SFWC, JCMK, SMJ <CIMW, DTP, Kopbumi> <MFI, FTUB>
4. 저축과 대안투자 *관련 국가 내 저축과 대안투자프로그램 설립	Unlad (lead) WARBE, AMC, Jarnas Pekabumi, MFI, SP, HWC, JCMK (2004년 실행위)

진행 중인 활동	
1. 이주노동자의 달 캠페인 ('Rights & Roots' campaign)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활동	MFA 사무국
2. WTO관련 캠페인 *입문서 개발 *2005년 홍콩개최 WTO회의에 대한 활동 계획	MFA 사무국 (lead) AMC, IMWU, Migrant Care, WARBE, CMR, ANWA, ASK, SMJ, WOREC, JCMK, HWC, CMA
3. 외국인 가사노동자 권리주창 *2003년 2월 회의 후속작업 (MFA-ILO-CMR)	MFA 사무국
4. MFA 차원의 대응/유엔과 국제회의 등 참여 *MRI와 국제 단체들과 협력 *유엔기구 활동 개입 *이주노동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MFA 사무국, MFA 실행위
5. 아시아이주노동자연보 (Asian Migrant Yearbook) *2004년판 연보를 MFA 10주년 기념판으로 제작 *CD-ROM과 온라인상으로도 활용토록 함	AMY Committee

B. 각 회원단체의 역할

- 단체들의 2004년 및 향후 활동계획과 프로그램에 여성이주노동자 이슈 부각.
- 노동력 송출 고용국간 쌍무/다자협정에 MFA 회원간 상호 관심영역과 특별/우선적 의제를 위한 상호연계 개발.

참가자 / 후원자 명단

- 해외참가자 현황
- 국내참가자 명단
- 후원자(단체) 명단
- 자원활동가 명단

● 해외참가자 현황

번호 호	이름			국가	소속단체
	Last	First	Middle		
1	AHMED	MD.	FARUQUE	Bangladesh	WARBE
2	KHAN	ANISUR	RAHMAN	Bangladesh	WARBE
3	HAQUE	SYED	SAIFUL	Bangladesh	WARBE
4	ALI	MD.	MOHSIN	Bangladesh	Srijanshil Shishu Kallayan O Punarbasan Sangstha
5	KHAN	MD.	Nur	Bangladesh	Ain O Salish Kendra(ASK)
6	Han	Jialing		China	Migrant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7	Harima	Reiko		Hong Kong	Asian Migrant Centre
8	deFalco	Christina		Hong Kong	Asian Migrant Centre
9	Varona	Rex		Hong Kong	Asian Migrant Centre
10	Qoiriah	Nurul		Hong Kong	Asian Migrant Centre
11	Suparno	Sutriyani	Atmo	Hong Kong	KOTKIHO
12	Sugiatih			Hong Kong	KOTKIHO
13	Yuniarti	Subari	Eni	Hong Kong	IMWU
14	Gurung	Yunraj		Hong Kong	Coalition for Migrants' Rights
15	Inzon	Shirley	M.	Hong Kong	Coalition for Migrants' Rights
16	Hilari	Eugin	Pereira	India	Migrant Forum India
17	Michael	Mary(Sr. Sally)		India	Migrant Forum India
18	NATAN	CARLA	JUNE	Indonesia	Center for Indonesian Migrant Workers
19	HARIANJA	TUMIUR		Indonesia	Center for Indonesian Migrant Workers
20	Nuriyati	Dina		Indonesia	Federa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FOMI)
21	Hidayah	Anis		Indonesia	Migrant CARE
22	Windaryanti	CH.Ratna		Indonesia	Jarnas Pekabumi
23	Khusnaeny	Asma'ul	Rafiqul	Indonesia	Wome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24	Manami	Yano		Japan	Solidarity with Migrants J매무
25	Okamoto	Masataka		Japan	Solidarity with Migrants Japan
26	Ninpaseuth	Xayaphonesy		Laos	Lao Women Union
27	Hector	Fernandez	Charles	Malaysia	Society for Christian Reflection
28	Sandanasamy	Florida		Malaysia	Tenaganita
29	Kaing Saw Richard			Myanmar	YMCA Myanmar
30	Aung	Tin	Tun	Myanmar	Federation of Trade Unions-Burma

번 호	이름			국가	소속 단체
	Last	First	Middle		
31	Dhungana	Pramita	Bhaushan	Nepal	Women Rehabilitation Center
32	Bhusal	Sabitra		Nepal	All Nepal Women Association
33	Awan	Zia	Ahmed	Pakistan	Layers for Human Rights and Legal Aid
34	David	Marivi		Philippines	Unlad-Kabayan
35	Canete	Rosario	Lumagbas	Philippines	Unlad-Kabayan
36	Macabuag	Ma.Lorena	Diva	Philippines	
37	Sana	Ellene	Aclan	Philippines	
38	Cortinag	Florence	May	Philippines	Kalungan Center
39	Baga	Adonis	Cabarles	Philippines	
40	Licmoan	Maria		Philippines	Migrant Forum in Asia
41	Gois	William		Philippines	Migrant Forum in Asia
42	SAMARANAYAKE	PREMAWANSA		Sri Lanka	MIGRANT SERVICES CENTRE
43	WIJESIRI	DUDLEY	SOMASINGHE	Sri Lanka	ACTFORM
44	CHANDRWATHIE	KASTHURIARACHCHILALAGE		Sri Lanka	WMC
45	PERERA	WEIJERIYA LIYANEYE	VIOLAT	Sri Lanka	ACTFORM
46	Lee	Allison/Li Hua		Taiwan	HOPE WORKERS' CENTER
47	O'NEILL	PETER	GERARD	Taiwan	HOPE WORKERS' CENTER
48	Somwong	Pranom		Thailand	MAP Foundation/Action Network For Migrant
49	Kerdmongkol	Adisorn		Thailand	TACDB
50	Blagbrough	Jonathan	David	Thail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51	Huynh	Tuyet	Thi Ngoc	Vietnam	Southern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52	GENCIANOS	GENEVIEVE	J	Switzerland	Migrant Rights International(MRI)
53	Narayan	Rajiv	C	UK	Amnesty International
54	Hacbang	Nonoi		Netherlands	Commission for Filipino Migrant Workers
Resouce Person					
55	Durano	Marina	Fe B.	Philippines	
56	Sri Tharan	Caridad	Tobia	Philippines	MFA Advisor
57	Tate	Alison	Margaret	Austrailia	ACTU
58	Reddy	Narasimha		India	Hyderabad University
59	D'Cunha	Jean		Thailand	UNIFEM
60	Shin	Hei Soo		Korea	UN CEDAW
61	Chung	Chin Sung		Korea	UN HRC sub-commission
62	Villalba	Mayan		Philippines	Unlad-Kabayan

● 국내참가자 명단 (참가등록 기준)

단체명	설명	주소	전화	메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고성현	이철승, 우삼열 고성현	경남 창원시 팔용동 17-11 3층	055-277-8779	kmwco@hanmail.net
고양시외국인노동자 살롱의집	김상훈, 김윤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208번지	031-921-5006	augustshk@yahoo.co.kr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한해정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16-11	062-971-0078	md0078@hanmail.net
광주중국동포의집	양경희, 오주희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71	031-768-5511	hjsclaw@hanmail.net
구미카톨릭문화센터	김명순		054-452-2314	kc2314@chol.com
남양주살롱의 집	이영, 사운, 나임, 이종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읍 녹촌2리 산33-9	031-594-5821	mwshalom@empal.com
남양주 이주노동자여성센터	정숙자, 김경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읍 녹촌리 263-49, 2층	031-595-0310	womencenternightsc.hool@hotmail.com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모임	김규복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1-43	042-621-8894	bdbarm@hanmail.net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봉구, 윤영덕 오세우, 김선희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16-2 아파트상가2층	042-631-6242	bgkim88@hanmail.net
대항지구화행동	김성배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468-5 2층	02-854-6950	wolfwood@cgakorea.org
두레방	유영님			
미리암이주여성상담소	정귀자, 노은혜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2층	02-747-2086	kcwc21@jino.net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최현자, 한명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1 근로자종합복지 회관 3층	032-654-0664	bmwh@chollian.net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송연순, 박혜영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3-18	032-348-7575	sys9191@hotmail.co.m
새사회연대	신수경	서울시 성북구 보문 6 가 135번지 신성빌딩	02-925-0062	nsociety@naver.com
서울신학대학교	류완형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박선희 김현철, 김지예 티튼	서울시 종로구 창신 2 동 130-102	02-3672-9472	smcw@chollian.net
서울중국동포의집	김해성, 남대환 변현단, 정동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 동 137-22	02- 863-6622	bheaven@daum.net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경태			
성남중국동포의집	이상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031-756-2143	smwh94@chollian.net

단체명	성명	주소	전화	메일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선동수, 권오현	서울시 성동구 흥익동 147-22	02-2282-7974	smwc@dreamwiz.com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백승범, 전선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86-2 2층	031-258-1671	dangun-21@hanmail.net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문민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9-4	031-434-3383	mkm0910@yahoo.co.kr
시흥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구자현, 곽영숙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9-6 길재빌딩 5층	031-431-0137	sh-mwc@hanmail.net
이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재관	충남 아산시 온천 2동 481 신우회관 3층	041-541-9112	people9112@netian.com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 이귀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58-4	031-921-7880	foa2002@foa2002.or.kr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이완 뚜라 외 1명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97	032-611-3370	asiansori@yahoo.co.kr
안산중국동포의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79-8	031-495-2288	jesusdongja@hanmail.net
앰네스티한국지부	김영식	대구시 수성구 대구수성 우체국사서함 36호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	김영미, 킥네슬리, 나운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740-7	031-837-4411	8201ksh@hanmail.net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한분수 김우정, 박정환 허훈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02-795-5504	a0011@cholian.net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구본희	경기도 김포시 북면동 411-9번지	031-997-2301	withmigrant@korea.com
외노협 사무국	고기복, 김민수 정정훈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02-747-6830, 1	jcmk@jcmk.org
용산나눔의집	최준기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46-17 3층	02-718-9986	ysnanum@korea.com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홍인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52-46	02-2699-9943	ysch84@hanmail.net
이주여성의집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최진영 강성혜, 김민경 박경주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130-102	02-3672-8988	wmwhrc@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원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신은하 정찬향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12동 7반	032-872-3612	iworker@cholian.net

단체명	성명	주소	전화	메일
제외동포재단	배준섭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606-B호		
제주외국인노동자센터	홍기룡	제주시 연동 2305-4	064-712-1141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남금란, 임광빈 권금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4동 137-16	02-723-4821	angelimgreen@hanmail.net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김기수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부빌딩 812번지 6층	041-565-5801	kknahee@hanmir.com
천주교 의정부 이주노동자상담소	합페트릭, 김귀숙, 황혜숙, 줄리아, 아일린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83-6번지 녹양동성당내	031-878-6926	umwc2000@yahoo.co.kr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안건수, 나금년 박노택, 이창언 고은영, 최용기 홍향림, 김춘희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413-2 2층	043-215-6252	jin1000center@hanmail.net
포천나눔의집	성범룡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723-1번지	031-532-2025	pcnanum@hanmail.net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노형수 최현영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02-708-4181	kcuu8@chol.com
한국국제노동재단	안성근, 우종역	서울시 마포구 1-3 서강빌딩 3층	02-3272-2045	migrant@koilaf.org
한국노총	전상민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168-24	02-715-1464	kingstar39@daum.net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163-5 전우빌딩 1층	02-577-6089	spernpd1@chillian.net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김미선, 최은희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326 상지빌딩 704호	02-2263-0516	munk@munk.org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최현모	인천시 남동구 구월 1동 1170-3	032-4288-114	migrant114@migrant114.org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오주용, 김소령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736번지 보광빌딩 4층	031-339-9133	iju@kclc.or.kr
유연희				
APWSL 한국위원회	장창원외 1명			
방문				
아시아교회협의회	이홍정	96, 2nd District, Pak Tin Village, Mei Tin Road, Shatin, N.T. Hong Kong SAR, CHINA	852-2691-1068	beyondhj@hanmail.net
한국여성재단	이유미, 신희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1 국민은행 서초동 지점 5층		
시민의 신문	강국진	서울시 종로구 권동동 128 태신B/D 4층	02-766-8891	sechenkhan@ngotimes.net

● 후원자(단체) 명단

일시(2004년)	후원자(단체)	후원금액(원)
08월 26일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1,000,000
08월 31일	향린교회	500,000
09월 08일	대한성공회	1,000,000
09월 09일	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200,000
09월 10일	한신대학교	97,000
09월 10일	원음방송	200,000
09월 10일	기독교장로회 총회	200,000
09월 13일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왕준	500,000
09월 13일	연세대 교목실	500,000
09월 13일	성공회 대학로교회	100,000
09월 14일	이화여대 교목실	500,000
09월 14일	한국인권재단	200,000
09월 14일	성은교회 허원배 목사	500,000
0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500,000
09월 15일	조희천	1,000,000
09월 15일	원불교 서울교구	500,000
09월 15일	한울안운동	500,000
09월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관 및 교회	10,405,000
09월 20일	감리교여선교회(장소사용)	3,305,000
09월 21일	한국여성재단	500,000
09월 21일	경동교회	500,000
09월 22일	대한의사협회	500,000
09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1,000,000
09월 24일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1,000,000
10월 04일	서울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집	1,000,000
10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00,000
총 계		26,707,000

● 자원활동가 명단 (통/번역, 문서, 영상기록, 안내 등)

강정숙	김미화	김아람	김영민
김효정	박가현	박수인	서다영
서인주	송병기	심금조	오지연
윤기원	이주영	이철호	장은옥
장효정	전민성	전선미	전추자
정성철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조은옥	지연희	최수선	최수현
최은경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신문기사 / 사진

- 신문기사
- 사진자료

[기독교타임즈 2004. 9. 6]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한국개최

여성 이주노동자문제 중점적으로 다뤄질 듯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지적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9차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철승목사, 외노협)와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AMC)의 주최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한남동 소재 여선교회관에서 열린다.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는 지난 1994년 대만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으며 1년 또는 2년의 간격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개최하며 이번 대회는 지난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다.

올해로 총 9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를 주제로 삼아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외노협은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불명확한 경계와 쟁점에서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이로 인한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며 "이밖에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국제기준과 체계, 2005년 1월 종결 예정인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주요 이슈인 서비스분야 인력이동에 관한 주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노협측은 이번 회의때 다뤄질 사항으로 △국가 인간안보 △여성과 이주노동의 여성화 △지속 가능한 개발 송금과 귀환 △노동의 비공식화 △이주노동자 건강과 복지 등의 주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 이주노동자협약'의 국제법 발효와 최근 시행된 국내 고용허가제 실시 등으로 국내와 아시아 국제 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외노협측은 밝혔다.

그러나 외노협은 회의 준비 과정에서 일부 이슬람국가의 참가자들의 비자발급 문제와 홍콩과 인도네시아노동자의 해고사태 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부와 해당국가가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간 네트워크인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igrant Forum in Asia, MFA)이 지난 94년 결성된 이후 다양한 주제로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대안들을 모색하는 회의로 자리잡아 왔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일본 홍콩 대만 등 주요고용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인력송출국 등 70여명의 이주노동자 조직, 지원단체 활동가 전문연구인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경겸 기자

* * * * *

[오마이뉴스 2004. 9. 7]

최대 규모의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열린다

1994년 이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했던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of Migrant Forum in Asia, 이하 RCM)가 한남동에 있는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 열린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18개국 70여 명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들과 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단체 실무자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제 발제와 토의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 운동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AMC),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JCMK)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올해 9회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96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참석 인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총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서연 외노협 공동대표는 6일 아시아이주노동자설명회에서 "이주민에 관한 유엔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아시아 지역총회이다. 지난 달 17일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는 등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제도상의 변화로, 아시아 뿐 아니라 많은 해외 참가자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이번 대회가 개최된다"라고 총회의 의의를 밝혔다. 유엔 이주민협약은 여러 유엔 기구와 유엔협약비준위원회(MFA 가입), 일부 관련국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3년 7월 발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정진성 유엔인권위 위원이 '이주노동자 이슈 관련 유엔기구 활용방안'에 대해,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성 이슈 관련 유엔조약 및 관련 위원회 활용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각국 이주노동자 관련 NGO 대표들의 발제와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자 문제를 주도해 온 각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치르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지역 이

주노동자 노동, 인권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연대를 통해 추후 활동을 책임있게 집행한다.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그동안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논의하는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비정부 단체의 총회로서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자에 관련한 주요 쟁점과 경향 및 상황 분석, 새로운 사실 파악, 전략세우기 등에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모으는 현장이 되어왔다.

참가자들은 13~14일 양일 동안 ▲국익과 인간안보(외국인력 고용국의 출입국 관리상의 문제) ▲여성과 이주노동의 여성화 ▲개발과 귀환 ▲분쟁·테러의 맥락에서 본 이주문제 ▲노동의 비공식화 (한국의 연수제도의 문제점) 등 각 분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인다. 15~16일은 참석단체들이 총회를 통해 아시아지역 이주 노동자운동 전략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17일은 이주노동자차별 철폐를 위한 행진을 탑골공원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까지 한 후, 각종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18~19일은 이주노동자 건강과 성, 귀환 프로그램 관련 이주노동자 저축과 대안 투자 등에 관한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고기복 기자

* * * * *

[오마이뉴스 2004. 9. 7]

'숙련공'은 강제추방하고 '초짜'에게 새로 교육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이철승·이하 외노협)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하의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대한 외노협의 입장과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고 국내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고용허가제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했다.

발제를 한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는 그동안 3D 업종에서 묵묵히 일해 IMF 때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장본인이며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하고, 기술면에서도 상당한 숙련공"이라며 "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 가치가 높은데 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수고를 하려느냐"고 고용허가제의 비효율적 측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도 "단지 '정주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경제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을 전원 추방하고 신규 인력 7만 9천명을 새롭게 도입해 사회 비용을 지불하려는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한국 사회에 적응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경제적·합리적·도덕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석 소장은 또 "정부가 앞으로 2020년이 되면 600만 명의 신규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백만 명이라면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일텐데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실패가 훤히 보이는 로테이션 정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소장은 "외국인보호소 중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도 전국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주노동자 수용인원은 모두 합해 837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남짓 단속한 불법체류자만도 1483명에 달해 17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할 경우 이들이 출국 전 2~3개월 간 머무를 수용시설이 없다"며 수용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말 합동단속 기간 중 붙잡혔던 1483명 중 190명이 체류허가를 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최 소장은 "아무 문제도 없는 합법 체류자를 무작정 체포 구금했다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도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고 밝혀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최준기 외노협 공동대표는 '고용허가제하의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대한 외노협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노협은 성명서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전면 폐기 ▲신규 인력 도입 전면 재검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사면 합법화와 강제추방·합동단속 중단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9차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 서울에서 개최

지난 94년 이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던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RCM)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발'을 위한 이주노동과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RCM은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외노협 공동주최로 한남동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 열린다. RCM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석을 하고 이주화를 통해 국가간 발전을 모색하며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주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8개국 1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RCM 워크숍에서는 ▲국가안보(국익의 개념)/인간안보 ▲여성과 이주노동의 여성화 ▲지속 가능한 개발, 송금과 귀환 ▲노동의 비공식화 ▲이주노동자 건강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미선 외노협 집행위원장은 "이라크 테러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소가) 이슬람국 단체에 공증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은행잔고증명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RCM에 관련 단체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 정현미 기자

* * * * *

[매일노동뉴스 2004. 9. 13]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열린다

19일까지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18개국 70여명 참가

지난 94년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 개최됐던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한남동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9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6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8개국 70여명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국내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13일부터 일주일동안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각국이 추진해온 개발과 이주노동의 문제, 그 과정에서 점차 늘어나는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불명확 경계와 주요쟁점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국제기준과 체계 △WTO 도하개발 아젠다 중 서비스분야 인력이동에 대해 다루고, 주제별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이주노동자 상황을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고용국의 출입국관리상의 문제) △여성과 이주노동의 여성화 △(지속가능한) 개발, 송금과 귀환 △노동의 비공식화 △이주노동자 건강과 복지 등 5개 주제를 살펴본다.

또 정진성 유엔인권위원이 '이주노동자 이슈 관련 유엔기구 활용방안',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성이슈 관련 유엔조약 및

관련위원회 활용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각국 이주노동자 관련 NGO 대표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15~16일 참석단체들이 총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운동 전략과 네트워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17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를 위한 행진을 탑골 공원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진행한 후 각종 문화공연을 한다. 또 18~19일 이주노동자 건강과 성, 귀환 프로그램 관련 이주노동자 저축과 대안투자 등에 대한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주민에 관한 유엔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아시아 지역총회로, 지난달 17일 고용허가제가 전면실시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제도상 변화에 대해 아시아뿐 아니라 많은 해외참가자의 특별한 관심속에 이번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 * * *

[매일노동뉴스 2004. 9. 14]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집행위원장>

"아시아이주노동자 연대의 지평을 넓힌다"

해외참가자 한국 이주노동자정책 관심 높아…연수생 폐지 등 변화 기대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13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 국내외에서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필리핀 소재),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홍콩 소재) 등 국내외 3개 이주노동자지원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요르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태국 등 주요 송출국과 고용국 등 모두 18개국에서 70여 명의 지원단체 활동가와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행사 첫날인 13일 김미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집행위원장(40·사진)을 만나 이번 행사의 의미를 짚어봤다. 그는 현재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무

처장과 외노협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94년으로, 아시아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때였다. 첫 회의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송출국과 고용국 모두의 문제라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매년 혹은 2년마다 아시아 각국을 돌며 열어왔다.”

-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인데, 의미는.

“96년 한국에서 3차 회의가 열렸다. 당시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또 당시 이주노동자 문제와 세계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던 때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유엔 이주노동자협약이 국제법 발효가 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다가 한국이 지난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의제는 ‘개발과 이주노동의 여성화’다. 의미는.

“아시아이주노동자 네트워크를 구성한 지 10년이다. 우리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진보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송출국과 고용국 모두 이주노동자 문제를 ‘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는 ‘희생’이 전제되는 것은 아닌지 볼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이주노동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대부분 비공식부문으로 흡수되고 있다. 그밖에도 ‘국익과 인권’, ‘이주노동자 건강과 복지’ 등 지난 8차 회의에서의 의제를 이어 이번 행사에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 이슬람국가 참가자들이 입국 때 애를 먹었다던데.

“그렇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 참가자들이 비자 취득이 어려워 애를 많이 먹었다. 한국 외교공관에서는 공증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은행잔고증명서 등 까다롭게 제출하라는 했다. 테러의 영향 탓이라는데 우리 가 미국 갈 때 차별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우선 14일 전략회의를 거쳐 15일 총회에서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를 보고 받고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승인하게 된다.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은 모두 각국의 이주노동자 지원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지원단체의 입장

에서도 아시아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 연대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수생제도 폐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사면합법화 등 한 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도 기대해본다.”

/ 연운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 * *

[경향신문 2004. 9. 15]

방글라 귀환노동자 ‘정착 도우미’

“외국에 나가 노동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와 다시 정착하는 일은 더 힘듭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로 13일부터 열린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온 방글라데시 귀환노동자회(WARBE, 이하 ‘와베’) 사이풀 회장(48). 그는 “오랜 기간 가정을 떠나 있었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은 고국에 다시 정착하기까지 엄청난 갈등을 겪는다”며 와베 결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 자신도 1998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에서 10년 넘게 노동을 한 해외이주노동자 출신. 지금은 고향에서 의류 공장을 경영하고 있지만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부터 ‘이상한 나라에서 온 앤리스’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저런 물건을 사 가지고 귀국하잖아요. 그러나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세관에서 통관이 안되는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어렵사리 집에 가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사이풀은 해외에 나갔던 노동자들이 고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건 ‘브로커’를 통해 해외로 취업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다.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주다보니 귀국 때 손에 쥔 돈은 몇 푼 안된다. 하지만 가족들도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돌아와보니 다시 그 턱이다. 또 해외노동자들은 해외에서 살다보니 돈맛과 편리함을 알아 힘든 농사일은 다시 하기 싫어하게 된다. 몇

년씩 비웠던 가정, 해외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설 자리조차 잃어버리기 십
상이라는 것이다.

“고국에 다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다시 해외로 나갑니다. 결국 국제적
인 떠돌이가 되는 거지요.”

사이풀은 사우디에서 귀국하자마자 ‘사우디 동료’들과 함께 97년 방글라데시
의 수도 다카에서 와베 모임을 결성했다. 귀국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해외노동
자들이 사이풀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들은 우선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들의 상담
역을 자청했다.

“해외 취업은 일시적인 거다, 돈 관리 잘 하라,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잘 살
아야 한다고 얘기해줬지요.”

그 사이 와베는 회원이 5,000여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 됐다. 와베는 꾸준히 해
외취업제도에 대한 개선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요구했다. 그 결과 2002년 정부가
‘해외동포와 취업자 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와베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유엔이주노동자협약
을 비준하도록 하는 일. 와베는 상근자를 두지 않는다. 회비 걷기가 힘든 까닭이
다. 사이풀도 회장이지만 사실상 자원봉사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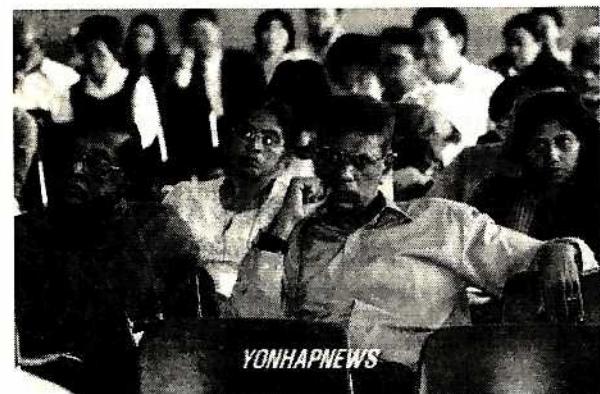
“한국에도 방글라데시인들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인들의 존엄성을 가지고 한
국인들과 연대·화합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이
외국인노동자로 살고 있는 한국에도 와베 지부를 만들 생각이다. / 윤성노 기자
ysh04@kyunghyang.com

[연합뉴스 2004. 9. 13]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 개막

해외로 노동력을 송출하거나 수입하는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관
계자들이 모여 개발정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문제와 그 대안 등
을 논의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회의>가 13일 서울 한남동 감리교 여선교회관
에서 아시아 18개국 관련단체 활동가들과 UN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참

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4. 9. 16]

“그들의 분노가 안들리십니까”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결성한 메이언 발랄라

지난 13일, 서울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이 막을
올렸다. 아시아 18개국에서 온 68명의 해외 참가
자들과 100여명의 국내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주노동과 이주노동의
여성화'에 대해 토론했다.



필리핀에서 온 메이언 빌랄바(53)씨도 행사를 맞아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1994년 이 포럼을 처음 만
든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다. 그가 처음 이주노동
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86년께. 민주화운
동을 하다가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국외로 추방된 남편과 함께 홍콩에 머물
때였다. 필리핀 출신 여성가사노동자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와 '속풀이'를 시작했다.

“밤새 마작놀이를 하는 고용주의 시중을 드느라 잠을 못 자는 여성도 있었고, 고용주가 월급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집밖에서 고용주에게 탄압받고, 일만 하고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훌대 받았습니다. 이중의 고통이었지요.”

마침 홍콩 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서 일하던 한국인 활동가 권호경씨를 만나 본국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권씨는 “당신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만들어보라”며 메이언을 독려했다. 각국 엔지오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88년 홍콩에 처음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를 열었다. 극심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임금체불, 불법해고의 사례가 줄을 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타국에서 핍박받는 데 익숙해진 그들이 자아존중감을 잃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답은 ‘민중자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공동체를 꾸렸다. 협동 양계장, 식품점, 코코아 섬유농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노동자들은 서서히 변해갔다. ‘사장’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됐다.

“희망도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암울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임금체불과 저임금, 산업재해에 신음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밤낮없이 쫓겨다니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을 눈여겨 봐주십시오. 저희의 불노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中 中 中 中

[시민의 신문 2004. 9. 16]

“이주노동·인신매매 경계 불명확해진다”

“이주노동을 합법화해야만 국제적 인신매매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이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주노동을 규제하면 할 수록 인신매매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에서 서울을 찾은 ‘렉스 바로나’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AMC) 사무국장은 아시아에서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경계가 점점 애매해진다고 경고한다. 그가 이번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서 발제한 발표문 제목도 ‘모호한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경계’였다. 바로나는 “인신매매란 자신들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은밀하게 입국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강제와 협박이 이뤄진다”고 규정했다.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사노동이나 공장 노동, 성산업에 종사한다. 고용주들은 계약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과 고용주의 관계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노동과 인신매매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밀입국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 알선업체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알선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밀입국인지 이주노동인지 인신매매인지 모호하기만 하다.”

인신매매의 지구화?

그렇다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의 결정으로 국제결혼하는 경우도 인신매매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도로 주변 곳곳에서 “착하고 아름다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고 써 놓은 플랭카드를 볼 수 있다. 돈을 매개로 한 결혼에는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알선업체가 있다. 바로나는 “사실 그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 였다고 털어놨다.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라면 인신매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 사랑을 결정할 것이가.”

물론 아시아이주센터가 모든 이주노동을 넓은 의미에서 인신매매에 따른 강제 노동 피해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바로나는 “홍콩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며 “인신매매만 부각하게 되면 모든 이주노동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는 철저하게 음지에서 이뤄진다. 사회단체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는 그럼에도 꾸준한 상담을 통해 국제 인신매매의 양상을 파악해 왔다.

태국, 베트남 등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유입하는게 아시아 이주노동의 흐름이다. 인신매매도 예외는 아니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많은 수가 여성인데 브로커들은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짓 계약을 맺어 여성들을 유탄국으로 데려간 다음 성산업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게 한다. 바로나는 “방글

라데시,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유럽, 미국 등으로 가기도 한다” 며 “인신매매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로나는 “동남아시아 송출국의 경우 딸을 가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은 딸을 내보낼 때 수수료를 목돈으로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피해여성의 부모도 피해자가 된다.” 이주노동자가 되기 위해 선 큰 돈을 빚내 브로커에게 줘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나는 타이완을 예로 들었다. “타이완에는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가 5천 명 이상이나 된다. 나이 지긋한 타이완 남성이 베트남에 가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처럼 속여 베트남 여성들 타이완으로 데려온다. 베트남 여성이 막상 타이완에 가보면 결혼은 휴지조각이 되고 성산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나는 “이와 비슷한 유형이 필리핀과 태국에서 1980-90년대에 매우 많았다”고 말한다.

바로나는 요즘 두드러진 다른 예를 들려줬다. “인도네시아 미성년자 여성들이 싱가포르나 홍콩, 말레이시아, 중동 지역 가정부로 많이 유입한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임금정보, 근로조건을 알리지 않고 나이를 속여 유입국으로 데려간다. 그러나 막상 유입국에 가보면 들었던 것과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다.”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주노동자운동을 모색하는 회의다. 이번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에는 19개 나라 70여명, 국내에서 70여명이 모였다.

한국, 시민사회는 좋은 본보기 정부는 나쁜 본보기

홍콩에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바로나. 그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상황과 운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곧바로 “아시아 이주노동자포럼(MFA)에서는 한국을 좋은 본보기로 인식한다”고 추켜세운다. 그는 “한국은 미등록노동자 비율이 높고 근무환경이 안좋다”고 꼬집으면서도 “시민단체가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바로나는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이끈 가장 큰 업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미등록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한 점을 들며 “아시아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기 급급할 때 한국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걸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오는데 신중해졌다. 필요하면 그냥 데려왔다가 필요 없으면 쫓아버리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주노동자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함부로 내쫓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한 한국운동은 짧은 시간에 급성장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뒤쳐져 있다.” 바로나는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정부가 여전히 작년에 발표한 유엔 이주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과 “산업연수생제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점”을 들었다.

바로나는 앞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이 가야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제연대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각국 정부에게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운동을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다섯 나라만 이주민협약을 비준했으며 그것도 모두 송출국”이라고 꼬집은 뒤 “공통된 상황인식을 기초로 한 국제연대를 통해 각국 정부가 ILO나 유엔이주민협약을 비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국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항상 자기나라를 예외로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에 예외는 없다.” / 강국진 기자
globalingo@ngotimes.net

* * * *

[연합뉴스 2004. 9. 18]

"외국인노동자 차별, 이젠 그만!" 걷기 대행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걷기대행진'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마로니에공원까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걷기대행진'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참석차 방한한 아시아 19개국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활동가와 국내 이주노동자, 중국동포, 양대 노총 등 12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행사에서 연수제도의 철폐와 미등록노동자 합침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행사에서 연수제도의 철폐와 미등록노동자 합침을 촉구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중단을 호소했다. 행진 뒤 마로니에공원에선 이주노동자들의 각국 음식과 전통의상 체험 행사, 공연, 아시아 문화 사진전 등이 마련됐다.

한편 외노협은 15~16일 열린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에서 '서울성명'을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명은 ▲반(反)테러법, 적법한 재판 절차 없는 구금 등에 따른 보호 ▲유엔이주노동자협약에 명시된 권리 보장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이주노동자협약에 명시된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노협은 또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서 회의 주제였던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관련,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중심으로 내년 서울에서 후속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 * * * *

[시민의 신문 2004. 9. 20]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막 내려

아시아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해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교육프로그램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해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상담소들을 중심으로 후속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내년에 서울에서 여성이주노동자관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홍콩,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서남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단체에서 각각 1인씩 6명의 실행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와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서울대회는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를 주제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회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이주노동의 여성화 △노동의 비공식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송금 △이주노동자 건강과 복지라는 다섯 가지 주제



를 집중토론했다.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토론 결과를 모아 지난 16일 서울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성명은 특히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연수제도 철폐 △외국인가사노동자와 연예인들에 대한 노동자 인정과 노동법에 따른 보호 △유엔이주노동자협약에 명시된 권리 보장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송출국과 고용국간 양해각서와 쌍무협정 체결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 실행 등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5차 수정안 까지 검토한 끝에 한국에서 이룩한 이주노동자 정규화 노력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의 주요이슈화한 외노협의 노력 등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17일 국내 이주노동자, 재중동포,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철폐 걷기 대행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의 날' 행사를 열었으며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문화마당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성 △귀환프로그램 △이주노동자 권리 주장 등 세가지를 주제로 이주노동자 교육훈련활동을 했다.

렉스 바로나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사무국장은 “회원단체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연대방안을 도출하는데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의 의의가 있다”며 “공동전략과 행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운동의 전략과 실천방법이 발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만 해도 처음에는 상담과 쉼터제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영향력도 미치고 유엔 회의에도 참여하고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도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1994년 처음 시작된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해마다 개최하다가 2002년부터는 2년마다 열린다.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공동대응주제를 정한다. 회의 참가자는 “제1회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는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창립과 함께 열렸다”며 “올해 서울회의는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과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모두 10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것이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바로나 사무국장은 “제3회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주제는 IMF와 세계화였는데 이제 다시 한국에서 세계화, 개발을 논의하게 됐다”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철승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도 “아시아에서 핵심 고용국가인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다루는 회의가 열리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제도와 구조에서 생겨났다”며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아 민족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장기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귀환정착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을 제대로 못해 다시 이주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번 돈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서 그 나라 민족자본을 육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귀환정착프로그램을 설명했다. / 강국진 기자
globalingo@ngotimes.net

* * * *

[매일노동뉴스 2004. 9. 20]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폐막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서울성명>채택

- 138 -

내년 서울서 여성이주노동자회의 개최키로

아시아 이주노동자 송출국과 고용국 등 18개국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해외활동가 70여명과 국내활동가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 막이 올랐던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19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차별철폐 인간띠잇기 행사 참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15~16일 열린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연수제도 철폐를 촉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서울성명>을 채택했다.

5차례나 수정을 거듭한 <서울성명>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며 일하며 투쟁’(94년 제1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주제)해 온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하고 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이주와 개발,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인간안보, 인신매매와 이주노동, 이주의 여성화, 이주노동의 여성문제, 노동의 비공식화, 귀환과 송금,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국제인권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성명>에서 이들은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자 송출국과 고용국에 대해 △반테러법(테러방지법), 적법한 재판 절차 없는 구금, 강제 에이즈와 임신테스트 등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령 폐지 △결사의 권리, 노조가입 권리, 참정권과 시민권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송출국, 고용국간의 협정 체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협약과 이주노동자 관련 ILO 협약의 즉각 비준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의 주제였던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관련해 특별히 한 국의 여성이주노동자상담소들을 중심으로 후속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내년 서울에서 여성이주노동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 * *

[크리스천투데이 2004. 9. 21]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폐막

- 139 -

'이주노동자 대한 차별적 법령 폐지하라'... 요구사항 밝혀

지난 일주일간 아시아 19개국 각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활동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막을 내렸다.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요구사항에서 “반테러법(테러방지법), 적법한 재판 절차없는 구금, 강제 HIV/AIDS와 임신테스트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령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등과 같은 아시아 역내 기구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지침과 협의를 실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회의를 주최하는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의 1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이주노동자들의 현 실태와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시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은 10년의 역사를 일군 이 포럼의 승리를 함께 자축했다.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이 이루한 중요 성과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이주민협약 비준 캠페인 조직', '국제이주노동의 중심부에 국제이주노동과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한 논의 배치',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속금을 활용한 이주노동자 본국 귀환프로그램 시도' 등이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아주노동자와 함께 살고 일하며 투쟁해온 활동가들의 노력을 새롭게 하고, 결의와 과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도 했다. /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 * *

[여성신문 2004. 9. 21]

“한국 ‘복지’ 이주여성과 나누자”

- 한국여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결혼상담소 허가제로 해야

인신매매형 국제결혼 막아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이자 종교여성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염 목사는 한 워크숍에서 ‘이주의 여성화’를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한 목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을 주제로 9월 13일 한국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 회의(RCM)’에 참가, 워크숍에서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증가하는 인신매매적 성격을 띤 국제결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결혼상담소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이주자 중 여성이 37.8%를 차지, 머지않아 이주의 여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제는 있으나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목사는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성매매 종사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주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여성’의 복지 범주에 이주 여성도 포함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 수입국과 송출국의 민간단체들의 연대가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중신학을 공부한 한 목사는 2000년 10월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전신인 ‘이주 여성노동자의 집’을 세워 현재 사무국장, 상담국장, 한글·문화교육 간사 세 명과 함께 이주 여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 결혼한 여성 중 이혼을 원할 경우 그들의 권익 확보를 최대한 지원한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 여성의 한국 적응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는 한글교실을 열고 있다. 또한 임신과 육아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모성보호팀을 운영, 임신부들의 병원 왕래와 육아를 돕고 있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이주 여성들은 많으나 활동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의 02-3672-8988 / 임영현 기자 sobeit3149@womennews.co.kr

* * * * *

[Korea Times 2004. 9. 19]

'Korea Should Show Leniency to Illegal Aliens'

A Filipino rights activist has called on South Korea to stop crackdowns on migrant workers who have overstayed their visas, showing leniency ou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randomly arresting and deporting migrant workers. It's no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Rex Varona,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Migrant Forum in Asia (MFA),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last week.

The MFA,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Philippines in 1994, has membership from some 25 migrant workers' groups in Asia.

Varona stress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legalize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who have been forced to leave the country by the government since the new Employment Permit System went into effect last month.

The new system is designed to guarantee better work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help local firms overcome a labor shortage. The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crackdown on and deportation of undocumented foreigners ami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Varona also called on the government to abolis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which allows local employers to pay low wages to foreign workers who are under training.

Korea should ratify the 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which was signed in June last year, he said.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reluctant to approve it.

Varona, who has been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Migrant Center (AMC) located in Hong Kong since 1996, made his fourth visit to Korea to attend the seven-day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which started on Sept. 13.

Some 160 activists, including 70 experts from 18 foreign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of "Migration for

Development and its Feminization Process" in Hannam-dong, central Seoul.

Varona used to be a student activist in his native country. He made up his mind to work for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Hong Kong after witnessing his friends being abused in foreign countries.

"Our delegation included 10 Indonesian workers who legally work in Hong Kong. Although all of us received a visa in advance despite complicated procedures, probably because they belong to a migrant workers' union in Hong Kong, the immigration officers kept interviewing us for an hour without any proper reason," Varona said.

"Compared to ten years ago, Korean immigration procedures have gotten more complicated and discriminatory against people suspected of becom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e said.

He said one of the positive changes concerning migrant workers in Korea is the growing number of local support groups.

He said foreign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who are mostly comprised of Filipino and Indonesian women, are now unionized. "It was the first time in Asia for migrant workers to form their own union," he said.

In 2000, Hong Kong authorities made a policy proposal, attempting to amend the employment law so that employers would be allowed to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of pregnant women, including both local and foreign women. Thanks to the joint efforts of both local and foreign female workers the authorities had to give up their plan.

Migrant workers in the city also twice resisted the Hong Kong authorities' attempts at a massive cut of foreign domestic workers' wages; by 35 percent in 1998 and around 15 percent in 2001, although the government finally succeeded in lowering it to 11 percent last year, he said.

/ By Lee Jin-woo Staff Reporter things@koreatimes.co.kr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사진모음

www.jcmk.org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사진모음

www.jcmk.org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사진모음

www.jcmk.org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사진모음

www.jcmk.org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사진모음

www.jcmk.org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사진모음

www.jcmk.org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국내 준비위원회

●업무분담

재정모금 : 회의재정 마련 - 외노협 전현직 대표와 임원
이철승, 최서연, 최준기, 최의풀, 석원정, 이정호, 김해성, 임광빈

사무행정 : 재정입출금 관리, 회의참가자 생활관리, 차량운행조직 등
최은희, 강성혜, 이성환, 고기복, 김민수

대외협력/홍보 : 해외 및 국내참가자 조직, 연락, 국내외 홍보 등
최준기, 구자현, 김미선, 고기복, 김민수

프로그램 : 주제관련 워크숍준비 및 기타 회의 프로그램 기획 논의(워크숍준비팀장)
석원정, 최진영, 이란주

문서기록 : 영상, 문서기록 등
선동수, 김우정, 구본희, 윤영덕

●준비사무국

강성혜, 고기복, 구자현, 김미선, 김민수, 김영미, 김우정, 김지예, 이완, 최은희, 최준기

●워크숍준비팀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내, 국제적 기준과 활용 등에 관한 문제 논의
석원정, 선동수, 정정훈, 김미선, 박선희

여성 : 여성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문제 논의
최진영, 한국염, 김영미, 노령수, 한분수, 김지예

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주노동자의 송금 및 귀환관련 논의
윤영덕, 이완, 이란주, 구자현, 박경서, 김현철, 김우정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발행일 : 2004년 12월

발행인 : 이철승, 최서연, 최준기

편집인 : 자료집 편집팀 (구본희, 구자현, 김미선, 김우정, 선동수)

발행처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110-480 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전화 (02) 747-6830,1

팩스 (02) 747-6832

이메일 jcmk@jcmk.org

홈페이지 www.jcmk.org